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hina: Country-by-country reporting update](#)

중국: 국가별보고서 관련 업데이트; 중국과 주요 국가간 정보 공유에 따른 신고의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OECD")가 2020년 2월 발표한 국가별보고서 신고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은 중국의 국가별보고서 신고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2016년에 OECD/G20 기반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BEPS") Action 13(국가별보고서 이행지침서)과 관련하여 국가별 보고서 요건을 도입한 제42호(Announcement on transfer pricing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를 발표하였고, 2017년에는 타 국가와 국가별 보고서의 정보교환이 개시될 것임을 시사한 제46호(Announcement on matters concerning country-by-country reporting)를 공포하였습니다.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March 11th,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부대표\)](#)

(Tel: 02-2112-0907)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중국 다국적기업들은 국가별보고서에 대해 모회사의 소재지국과 중국간 정보 교환 협약이 체결될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관련 자료(또는 Notification)만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수 중국 기업들이 투자 하고 있는 홍콩, 영국, 케이맨 제도 및 기타 관할권은 다국적기업들인 국내 납세자들에게 국가별보고서를 현지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홍콩 세무당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에 대하여 논의 중이며 주요 사업장이 중국 본토에 있지만 모회사를 다른 관할권(홍콩 등)에 설립한 다국적기업들은 현지 조세입법 현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중국 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019년 말 홍콩 세무당국은 2018년 국가별보고서 신고 기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연장 하였습니다. 중국과 홍콩 세무당국이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국가별보고서 교환에 대해 합의할 경우 중국 본토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한 다국적기업들은 홍콩 세무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 본토에 위치한 다국적기업들은 홍콩 계열사를 통해 현지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기한이 다가오면서 다국적기업들은 중국과 홍콩 간 협의 현황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Germany: Arm's length principle, proposed amendments \(February 24th, 2020\)](#)

독일: 정상가격 원칙에 대한 세법개정안 발표

2019년 12월 10일 독일 연방 재무부는 2016년 및 2017년 유럽연합이 도입한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 "ATAD") I & II를 이행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토론 목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자산 및 사업장 이전 시 적용되는 출국세(exit taxation) 기준 도입
-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이하 "CFC") 적용 세율
- 양 국가에서의 세무처리상 불일치를 이용하는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조세회피 행위 관리 방안 도입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법적근거 확립

정상가격 원칙

본 개정안은 독일의 국제조세법 (Aussensteuergesetz, 이하 "AStG")이 OECD 이전가격 지침서 상 내용에 더욱 부합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이사

(Tel: 02-2112-0277)

실질과세 원칙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국제적 이전가격 실무적 관행을 차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 기준

독일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준이 연결기준 직전년도 총 매출액 1억 EUR에서 0.5억 EUR로 하향 조정 될 예정이며, 사업연도 종료 이후 당해 사업연도 내에 과세당국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융거래

본 개정안에 따른 소득조정은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간 해외금융거래(예: 자금대여)로부터 발생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적용됩니다.

- 납세자의 (1) 자금거래 약정기간 내 채무상환능력과 (2) 자금거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이 입증되지 못 하는 경우
- 납세자의 자금거래 약정금리가 다국적기업이 제3자로부터 차입하는 금리를 상회하거나,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법적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중개 서비스 혹은 거래 forwarding 기능, 자금관리 기능, Cash Pooling 기능 등은 저부가가치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외특수관계자간 금융거래 보상은 동일한 기간별 최고등급 국채금리에 적용되는 무위험 이자율로 제한됩니다.

개정안 적용시기

본 개정안은 2020년 과세연도부터 시행됩니다.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준은 추가 지침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고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Hong Kong: Possible implications of OECD transfer pricing guidance on financial transactions \(February 21st, 2020\)](#)

홍콩: OECD 이전가격 지침이 금융거래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OECD는 2020년 2월 11일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Transfer Pricing Guidance on Financial Transactions: Inclusive Framework on BEPS: Actions 4, 8-10)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특수관계인간 체결된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분석방법 중 실제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서술적(accurate delineation of the actual transactions)설명 및 위험의 통제가능성(control over risk)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2015년에 발표된 OECD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Action 8-10번 보고서를 뒤이어 2017년에 발표된 OECD

이전가격 지침서(Transfer Pricing Guidelines)에 포함된 주요 추가사항입니다. 본 지침에 다루어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서술적 설명을 통한 자본 구조와 상업적 및 재무적 관계 파악
- 자금기능(Treasury functions): 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 유동성 공통관리(cash pooling), 헤징(Hedging)에 대한 지침
- 지급보증에 대한 정확한 서술적 설명 및 정상가격의 산출
- 자가전속보험(captive Insurance) 및 재보험의 합리성, 정확한 서술적 분석, 정상가격의 산출
- 무위험 수익률 및 위험조정 수익률 적용 방안

2017년 발표된 OECD 이전가격 지침서는 홍콩 이전가격 조례에 참고되었으며, 지침으로도 채택되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홍콩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이하 "IRD")이 홍콩 내국세법에 본 지침을 실무적으로 우선 적용 할 지에 대한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IRD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향후에 실무지침(Departmental Interpretation Practice Note, 이하 "DIPN")을 잠재적으로 발표하고, 상대국의 과세당국과 양자간 논의 혹은 협상에서 OECD의 금융거래 이전가격 지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콩 납세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금융거래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정확한 서술적 접근방법

본 지침은 금융거래에 대한 정확한 서술적 설명과 위험의 통제 분석 접근법을 명시하며, 금융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경제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만 동 지침은 서술적 접근방법의 적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기존에 허용하던 접근방법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금융거래의 재분류(Recharacterization)

현재 홍콩 사업소득세 및 이전가격 관점에서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에 대해 재분류하는 관행이나 법률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IRD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홍콩 과세당국은 복합 금융상품(hybrid instrument)에 대한 법적 권리 및 의무를 바탕으로 거래의 성격을 규정 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홍콩에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형식을 토대로 판단하는 접근방법이 우세하며, 세무적인 목적으로 거래 형태를 재분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자금거래를 재분류하는 방법과 실질보다 형식을 고려하는 전통적인 분석 방법은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실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자금거래

홍콩 이전가격 규정이 시행되면 해외 특수관계인간 무이자 자금거래는 정상가격에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독립적인 기준에서 제3자 은행과 거래한 유사한 자금거래 이자를 적용하는 조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통관리

본 지침에는 유동성 공통관리자(cash pooling leader)에게 수행 기능과 위험 부담에 부합한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유동성 공통관리자의 활동 범위는 중개자 혹은 대리인 활동부터 포괄적인 사내 은행과 같은 자금조달처 기능 수행과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통화 위험 등의 위험 부담까지 포함됩니다. 유동성 공통관리자가 중개 역할만 수행할 경우 예대금리차 보상이 아닌, 수행 기능에 부합한 보상만 지급받아야 합니다. 유동성 공통관리 효익은 일차적으로 유동성 공통관리자에게 적합한 보상을 지급한 후 유동성 공통관리 참여자(cash pool member)들에게 배분됩니다.

본 지침이 수용되면 유동성 공통관리 구조와 관리자 및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수익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금융거래 이전가격 보고서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DIPN 59 발표 전 발생한 거래 및 면제 대상 국내거래

IRD는 2019년 7월 19일에 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 실무지침 DIPN 59를 발표하였으며, OECD가 2017년 발간한 이전가격 지침서의 내용과 일관성 있게 제정되었음을 고시하였습니다. DIPN 59는 2018년 7월 13일 홍콩 재무부가 고시한 홍콩 BEPS 및 이전가격 법안 확정일자 개시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발효된 거래와 특정 국내거래는 홍콩 이전가격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Turkey: Country-by-country reporting,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guidance](#)

터키: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이전가격 문서화 지침

터키는 대통령령 제2151호(2020년 2월 24일)에 따라 국가별(CbC) 보고서 및 이전 가격 문서화에 관한 지침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법령은 OECD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Action 13(국가별보고서 이행지침서) 에 의거하여 이전가격 문서화 및 보고서 요건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들은 2019 사업연도 국가별보고

서 및 통합기업보고서를 2020년 12월까지 구비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은 세 가지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 다국적기업 전년도 매출액 및 자산 5억 TRY 이상일 경우 통합기업보고서를 구비해야 하며, 2019 사업연도 통합기업보고서는 2020년 12월 말까지 구비해야 하며 터키 세무당국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 기존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요건과 동일하며 국내외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내국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함.
-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 다국적기업의 전년도 연결매출이 7억 5천만 EUR를 초과할 경우 제출 대상으로 간주되며, 2019 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는 2020년 12월 말까지 구비하여 터키 세무당국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 법령은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관련 자료 요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 보고 주체와 제출 예정에 대해 과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관련 자료는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0년 8월)에 터키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2020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개정안

본 법령은 기존 이전가격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터키의 이전가격 규정이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참조
- 특수관계자 정의: 10% 이상 지분관계 존재 시 특수관계자로 정의
- 거래순이익률방법과 이익분할방법의 적용 인정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우선순위 제거
- 이전가격문서가 기한 내 적절하게 구비된 경우 부과금 50% 면제

이 외에 동 개정안은 사전승인신청서(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와 관련하여 APA 소급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Rollback 규정 및 납세자가 APA 만료 6개월(기존 9개월) 전에 APA 갱신 요청을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